

영국 소방조직 기초자료 및 화재 오인·허위신고 현황

1. 영국 소방조직 기본 현황

- 국가명 : 영국, 잉글랜드¹⁾
- 인구 : 55,268,100 명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 소방담당 부처 :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DCLG)
: 지역사회·지방정부 중앙부처가 잉글랜드 지역의 소방업무 관할 및 입법권한을 가짐.
 - Fire and Rescue Services: 영국 소방구조청
- 소방 예산 : 2013/14년 기준, £2.43십억(약 3.6조원) (HM Treasury, 2015)
- 소방서 수 : 2015/16년 기준, 1,400 (Home Office, 2016a)
- 소방 공무원 수 : 2016/17년 기준, 22,957명 (Home Office, 2016b)
- 연간 출동건수(2016/16 기준):

국가	화재건수(건) (Home Office, 2016c)	화재출동(건) (Home Office, 2016c)	구조출동(건) (Home Office, 2016d)	구급출동(건) (Home Office, 2016d)	기타출동(건) (Home Office, 2016d)
England	161,770	385,384	102,456	45,080	26,043

※ (건강상태 관련)응급환자의 이송은 우선적으로 'NHS Ambulance Services' (영국국민보건 앰블런스 서비스)에 의해 제공.

1)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소방업무를 관할 및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처, 공공기관이 모두 달라, 영국 전체 소방예산에서 85% 가량을 차지하는 잉글랜드를 대표로 지정하여 조사함.

2. 영국 화재 오인 · 허위신고 현황

□ 오인 · 허위신고 분류기준

- Malicious 또는 Haux Calls: (의도적) 허위신고
- Good Intent: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선의적) 오인신고
- Due to Apparatus: 자동 화재경보기 및 감지기 등의 각종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오인신고

□ 영국 화재 오인 · 허위신고 통계(최근 3-4년)

국가	분류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England (Home Office, 2016e)	Malicious	8,799	7,615	6,810	6,945
	Good Intent	64,309	67,397	65,870	64,870
	Due to Apparatus	158,626	149,111	143,694	142,294
	Total	231,764	224,123	215,828	214,109
Wales (Stats Wales, 2017)	Malicious	689	646	605	558
	Good Intent	4,218	4,735	4,735	4,526
	Due to Apparatus	10,181	9,812	10,145	9,414
	Total	15,088	15,312	14,498	14,498
Scotland (Scottish Fire and Rescue Service, 2016)	Malicious	2,308	2,366	2,056	2,375
	Good Intent	9,873	9,618	9,257	8,847
	Due to Apparatus	35,107	35,236	37,355	37,635
	Total	47,288	47,220	48,688	48,857
Northern Ireland (Northern Ireland Fire and Rescue Service, 2015)	Malicious	1,957	1,901	1,614	NA
	Good Intent	12,549	12,826	11,917	NA
	Due to Apparatus	8,428	7,835	7,986	NA
	Total	22,934	22,562	21,217	NA

3. 오인 · 허위신고 감축 관련 추진정책 사례

1. 화재안전규칙(Fire Safety Order)

: 소방 설비의 보수 · 유지, 정기점검 이행 및 오류기록 의무 (GOV.UK, 2017)²⁾

- (주요 내용) 기업(Business) 및 비주거(Non-domestic)용 건물들을 대상으로 건물의 소유주, 고용주, 건물 설비 관리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자를 ‘책임자 (Responsible Person)’로 규정하며, ‘책임자’는 화재위험도평가(Fire Risk Assessment), 긴급상황 행동계획(Plan for Emergency), 각종 화재 안전장치들의 정기점검(Regular Checks) 및 보수·유지, 오작동 기록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규제 및 처벌규정) 해당 지역 소방청은 건물들을 방문하여 화재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청은 평가결과 및 화재안전규칙이행의 불충분 정도를 조사하여 부적합 판단시 ‘책임자’에 가벼운 변경조치의 알립(Alteration Notice)부터, 기한이 주어진 개선통고(Enforcement Notice), 건물접근 및 제한을 명하는 금지통고(Prohibition Notice) 등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화재안전규칙(Fire Safety Order) 불이행에 대한 법적 처벌로는 경미한 처벌인 경우 £5,000 가량의 벌금부터, 중한 처벌의 경우 벌금량에 제한이 없을 수 있으며, 최대 징역 2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2. 지속적 오인신고(False Alarm Call)관련 벌금부과 제도

: 지속적 자동 화재경보기 및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반복적인 오인신고 및 소방 출동시 (1년간 10회부터)

- (주요 내용) 런던소방청(London Fire Brigade)의 경우, 12개월 동안 반복적

2) (GOV.UK, 2017) Fire Safety in the Workplace

<https://www.gov.uk/workplace-fire-safety-your-responsibilities/who-is-responsible>

인 자동 화재경보 및 감지기 등의 소방기기 오류에 의한 오인신고(False Alarms) 발생시 일반 가정주거 및 요양시설을 제외한 건물에 한하여, 10번째 소방출동부터 £326 (VAT 별도추가)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2014-2016년간 시행함 (현재 제도수정 계획으로 일시적 중단). 3)

런던소방청은 이 제도와 관련하여 각종 불필요한 오인신고방지를 위해 다음의 지침들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벌금부과 및 불필요한 오인신고 방지를 위한 지침

- ▶ 일반적인 소방 설비의 유지·보수뿐 아니라 화재경보기 오작동 원인의 적절한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반드시 적절한 관리기관에 의뢰 할 것.
- ▶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한번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즉시,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찾고 제대로 보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것.
- ▶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설비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
- ▶ 화재가 발생했다는 확신이 서지만, 화재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999로 화재신고를 하되, 만약 오인신고로 밝혀졌을 경우 추후에는 불필요한 오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좀 더 심사숙고할 것.

3. 허위신고(Hoax Calls)관련 벌금부과 제도

: 허위신고 (Hoax Calls)는 2004년도 제정된 소방 및 구조법의 섹션 49 (Section 49 of the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에 의거하여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허위신고자는 최대 £2,500 벌금부과 또는 벌금부과를 동반한 최대 징역 51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영국은 각급 지방정부간 권한 및 사무배분이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런던시 및 County(비대도시권 주) 행정구역은 분리된 소방청(Fire Brigade 또는 Fire Service) 기관 및 소방관련 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있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 p.2).

[참고 자료 및 통계 데이터 출처]

1.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2015 [자료 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local-government-financial-statistics-england-2015>]
2. GOV.UK (2017) Fire Safety in the Workplace [자료 링크:
<https://www.gov.uk/workplace-fire-safety-your-responsibilities>]
3. Home Office (2016a) Fire Statistics, 'FIRE 1403' [링크 페이지에서 'FIRE 1403' 데이터 다운로드: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al-data-sets/fire-statistics-data-tables#other>]
4. Home Office (2016b) Fire Statistics, 'FIRE 1102' [링크 페이지에서 'FIRE 1102' 데이터 다운로드: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al-data-sets/fire-statistics-data-tables#other>]
5. Home Office (2016c) Fire Statistics, 'FIRE 0102' [링크 페이지에서 'FIRE 0102' 데이터 다운로드: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al-data-sets/fire-statistics-data-tables#other>]
6. Home Office (2016d) Fire Statistics, 'FIRE 0901' [링크 페이지에서 'FIRE 0901' 데이터 다운로드: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al-data-sets/fire-statistics-data-tables#other>]
7. Home Office (2016e) Fire Statistics [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fire-statistics>]
8. HM Treasury (2015) 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es 2015 [자료 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46716/50600_PE_SA_2015_PRINT.pdf]
9. Northern Ireland Fire and Rescue Service (2015) Table 3. False Alarm Calls received by NIFRS [자료 링크:
https://www.nifrs.org/wp-content/uploads/2015/06/2014_15_Table_3_All_False_Alarm_calls_by_Cat.pdf]
1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Population Estimates for UK, England and Wales,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mid-2016 [자료 링크: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s/bulletins/annualmidyearpopulationestimates/latest>]
11. Scottish Fire and Rescue Service (2016) SFRS Incident Statistics 2015-16 [자료 링크:
http://www.firescotland.gov.uk/media/1009443/fire_and_rescue_statistics_scotland_2015_16.pdf]
12. Stats Wales (2017) False alarms by reason and financial year [자료 링크:
<https://statswales.gov.wales/Catalogue/Community-Safety-and-Social-Inclusion/Community-Safety/Fire-Incidents/Fires-and-False-Alarms/falsealarms-by-reason-financialyear>]